

제279회 임시회
2009.4.22(수)

심 사 보 고 서



산 업 경 제 위 원 회

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09. 4. 22(수)
산업경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 출 자 : 이영복 의원 외 6인

나. 제출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09년 4월 15일

○ 회부일자 : 2009년 4월 16일

다. 상정일자 : 제27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

○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(2009.4.21) 상정, 제안설명 및
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 : 산업경제위원회 이영복 의원)

가. 제안이유

○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기업이나 기업인을 지원하여 기업하
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, 시행되고 있는 '충청북도 기업사랑과
지원에 관한 조례'의 일부 조문 및 자구를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
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수여되는 상과 인증의 명칭 변경에 따른 현실화(안 제4조, 안 제8조, 안 제10조)
- 협의회 구성 내용을 현실에 맞게 조정(안 제15조)
- 효율적 운용을 위한 조문의 자구수정(안 제16조, 안 제17조)

3. 검토보고 요지

(산업경제전문위원 : 민병완)

- ‘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’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기업이나 기업인을 지원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시행되는 조례로서, 시행상 제기된 일부 조문 및 자구를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함.
- 다만, 개정되는 조례안의 시행과 운영상에 관한 문제점은 없는지 관련 부서의 의견을 청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제3호 중 “으뜸기업”을 “품질경영우수기업”으로하고, 같은 조 같은 항 제5호 “이달의 충북우수중소기업인상”을 “충북우수중소기업인상”으로 한다.

제8조제1항제1호 중 “제4조 제2호”를 “제4조제1항제2호”로, 같은 조 같은 항 같은 호의 “주사무소와 공장을 둔 제조업체로서”를 “본사 또는 사업장 등을 둔 기업으로서”로,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의 “제4조 제3호의 ‘으뜸기업’ ”을 “제4조제1항제3호의 ‘품질경영우수기업’ ”으로,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의 “제4조 제5호”를 “제4조제1항제6호”로 각각 한다.

제10조제1호 중 “으뜸기업”을 “품질경영우수기업”으로 한다.

제15조제4항 중 “부지사”를 “행정부지사”로 하고,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“도 실·본부·국장”을 “도 실·국장”으로 한다.

제16조제2항 중 “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공무원 등으로”를 “1인을 포함한 5인 이내로” 한다.

제17조제1항 중 “건의사”를 “건의사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같은 항의 “옴부즈”를 “옴부즈만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예우 및 지원대상) ①(생략) 1.-2. (생략) 3. ‘<u>으뜸기업</u>’으로 지정된 우수기업인 4. (생략) 5. 충북지방중소기업청 선정 <u>이달의 충북우수중소기업인상</u>을 수상한 우수기업인</p>	<p>제4조(예우 및 지원대상) ①(현행과 같음) 1.-2. (현행과 같음) 3. ‘<u>품질경영우수기업</u>’…………… …… 4. (현행과 같음) 5. …………… <u>충북우수중소기업인상</u>…………… ……………</p>
<p>제8조(선정 및 지정 등) ①(생략) 1. 제4조 제2호의 ‘자랑스러운 향토기업인’은 도내에 <u>주사무소와 공장을 둔 제조업체로서</u> 10년 이상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인 중 5명 이내 2. 제4조 제3호의 ‘<u>으뜸기업</u>’은 국제표준화기구(ISO)의 규격 인증을 획득한 기업 중 5개 업체 이내 3. 제4조 제5호의 우수기업인에 해당한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기업인 5명 이내</p>	<p>제8조(선정 및 지정 등) ①(현행과 같음) 1. <u>제4조제1항제2호</u> …………… …………… <u>본사 또는 사업장 등을 둔 기업으로서</u> …………… …………… 2. <u>제4조제1항제3호의 품질경영우수기업</u> …………… …………… 3. <u>제4조제1항제6호</u> …………… ……………</p>
<p>제10조(품질경영 활동지원) (생략) 1. 기업의 품질경영에 관련된 지원사업 및 <u>으뜸기업</u> 지정사업 2.-3.(생략)</p>	<p>제10조(품질경영 활동지원) (현행과 같음) 1. 기업의 품질경영에 관련된 …………… …………… <u>품질경영우수기업</u> …………… 2.-3.(현행과 같음)</p>

현 행	개 정 안
<p>제15조(협의회 구성 등) ①-③(생략) ④위원장은 지역경제 업무를 관장하는 <u>부지사</u>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해당 안건에 따라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. 1. <u>도 실·본부·국장</u>, 도 의회의원 시·군의 부시장·부군수 2.-3.(생략)</p>	<p>제15조(협의회 구성 등) ① ③ <u>현행과 같음</u> ④..... <u>행정부지사</u> 1. <u>도 실·국장</u>, 2.-3.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6조(기업애로지원센터 설치 운영) ①(생략) ②센터는 센터장 <u>1인</u>을 포함한 <u>5인 이내</u>의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며, 센터장은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. ③(생략)</p>	<p>제16조(기업애로지원센터 설치 운영) ①(현행과 같음) ②..... <u>1인</u>을 포함한 <u>5인 이내</u>로 , ③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7조(기업애로지원 읍부즈만의 운영) ①센터내에 기업관련 <u>건의사</u> 파악 및 애로사항 해소 등을 위하여 충청북도 기업애로지원 <u>읍부즈</u>(이하 "읍부즈만"이라 한다)을 운영할 수 있다. ②-④(생략)</p>	<p>제17조(기업애로지원 읍부즈만의 운영) ①..... <u>건의사항</u> <u>읍부즈만</u>..... ②-④(현행과 같음)</p>

관 계 법 령

□ 중소기업기본법

제1조(목적) 이 법은 중소기업이 나아갈 방향과 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의적이고 자주적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나아가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정부 등의 책무) ①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종합적인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.

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.